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김정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의안번호4752)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게 되면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 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자에도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3항).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에 따른 부수되는 입법조치 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부디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17. 11.

국회의원 김영진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출신 김영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이며, 중대한 공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

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안 제3조 삭제, 안 제4조·제5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제 안 설 명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5580)

2017. 11. 00.

국회의원 심재권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심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비직업 외교관
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직책으로 「외무공무원법」에 의하면 특
임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임공관장의 신규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칫
정실인사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
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 제안 설명】

2017. 11. 17.

국회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

국회의원 윤한홍

존경하는 정우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청문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도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과도한 신상털기에 치우쳐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인사청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설 명

2017. 11.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증빙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세세한 부분에 관해 변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 「쓸모 없는 인사청문회」, 「정쟁으로 점철된 인사청문회」 등 매년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비판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해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2017. 11. 17.

국회의원 신보라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 의원님들의 동의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음주운전 전력이나 성폭력·성희롱과 같이 국민 정서에 심하게 반할 여지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에 지명되더라도 이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의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087)

2017. 11. 17.

국회의원 정 성 호
(더불어민주당, 양주시)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양주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뜻의 경우와
국회 뜻의 경우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같은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 주관위원회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인사청문 주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법인

현행 「인사청문회법」 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하여 공직 후보자 인상청문과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11.17일)

※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기간 내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효율적으로 검증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의 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